

# 건설제도 알리미 2017. 02

CAK 대한건설협회

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


## 1 | 행정부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· 시행('17.2.14)

- 입찰가격 평가산식·균형가격산정·단가심사·소수점처리 등 국가계약기준 준용(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)

현행	개정안
$A * \left( 1 - 2 \times \left  \frac{\text{입찰자 평균가격} - \text{입찰가격}}{\text{예정가격}} \right  \right)$ <p>* A : 500억 미만 50점 / 500억 이상 1,000억 미만 40점 / 1,000억 이상 35점</p>	<p>i)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</p> $\frac{\text{입찰금액 심사점수}}{\sqrt{1 - A \times \left( \frac{\text{당해투찰금액} - \text{균형가격}}{\text{예정가격} - \text{균형가격}} \right)^2}} \times \text{배점}$

-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(제7절 낙찰자 결정)

- (현행) 추첨 → (개정안) ①기술이행능력 점수 높은자 → ②입찰금액 낮은자 → ③추첨

- 신용평가 서류(감사보고서) 제출 부담 완화(제6절 심사 분야별 · 항목별 심사요령 중 ② 적격성 심사)

- (현행) 감사보고서 → (개정안) 감사보고서 또는 협회 증빙서류

**【시행일 : '17.2.1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시행】**

## 2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· 시행(17.2.4)

### <시행령>

-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축규제 완화 적용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(제6조 및 제32조)
  -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규정 완화 적용
  -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이상 건축물 → 2층이상 건축물로 확대
-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(제10조의3)
  - (적용대상) 층수 50층이상,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물 한 동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- ※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(법 제13조의2)
- 다중이용건축물 시공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(제18조의2)
  - 시공자는 기초공사 후, 지붕설치 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·보관 의무
-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(19조의3)
  -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·재산피해 발생시,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업무정지
  - 업무정지 처분 대상 재산피해 규모를 (하)도급 금액의 10%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로 정함

-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용도 추가(별표 1)

-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 화장시설, 동물건조시설, 납골시설 : 묘지관련시설
-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장례식장 : 장례관련 시설

### <시행규칙>

-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제출 방법(제18조의2)

- 시공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, 감리자는 동 자료를 감리보고서 함께 건축주에게 제출

-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공개(제19조의5)

- 국토부장관은 주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 등이 행정 처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토록 함(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세움터)